

7



부 록

- 학 칙
- 학칙시행세칙

- ▲ 인하찬가
- ▲ 필승의 노래
- ▲ 캠퍼스 안내도

학 칙

제정 : 1957. 4. 1.

개정 : 2014. 2. 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인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창의-후생, 근면-자립, 봉사-공영이라는 창학 이념을 바탕으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인격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제) 본 대학교에 공과대학, IT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상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공학대학원, 정책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을 둔다.<개정 2010. 7. 6>

제3조 (대학의 학제 및 정원) ① 각 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1] 내지 [별표 1-4] 와 같다.<개정 2010. 10. 11, 2011. 10. 7, 2012. 6. 22, 2013. 1. 3, 2013. 6. 4, 2014. 2. 11>

② 각 전공별 기준인원과 전공의 배정시기 및 방법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모집단위의 소속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당시의 재적생에 대한 학적이동의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의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각급 학위과정에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공학대학원, 정책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각각 따로 정한다.<개정 2010. 7. 6>

제2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5조 (부속학교) 본 대학교 사범대학에는 부속중학교와 부속고등학교를 둔다.

제6조 (부속기관) 본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기관을 두며, 각 부속기관의 내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 7. 6, 2013. 6. 4, 2014. 2. 11>

- | | | |
|-------------|-------------|--------------|
| 1. 정석학술정보관 | 2. 박물관 | 3. 평생교육원 |
| 4. 예비군연대본부 | 5. 대학건강센터 | 6. 신문사 |
| 7. 방송국 | 8. 생활관 | 9. 정석물류통상연구원 |
| 10. 학생군사교육단 | 11. 문화예술교육원 | |

제7조 (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부설연구소를 두며, 각 연구소의 내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 10. 11, 2011. 3. 23, 2011. 10. 7, 2012. 1. 9, 2013. 1. 3, 2014. 2. 11>

- | | |
|------------------------|-------------------------------|
|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 2. 인문과학연구소 |
| 3. 사회과학연구소 | 4. 기초과학연구소 |
| 5. 산업경제연구소 | 6. 교육연구소 |
| 7. 생활과학연구소 | 8. 학생생활연구소 |
| 9. 항공경영관리연구소 | 10. 국제관계연구소 |
| 11. 한국학연구소 | 12. 해양과학기술연구소 |
| 13. 스포츠과학연구소 | 14. 의약품독성연구소 |
| 15. 고분자연구소 | 16. 소재연구소 |
| 17. 컴퓨터과학응용연구소 | 18. 기계기술공동연구소 |
| 19. 정보전자공동연구소 | 20. 환경연구소 |
| 21. 경영연구소 | 22. 선박해양공학연구소 |
| 23. 반도체 및 박막기술연구소 | 24. 화학동역학연구소 |
| 25. 의과학연구소 | 26. 수자원시스템연구소 |
| 27. 건설환경시스템연구소 | 28. 황해권수송시스템연구센터 |
| 29. 지리정보공학연구소 | 30. 플라즈마기술 기반센터 |
| 31.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 32. 법학연구소 |
| 33.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 | 34. 인간중심컴퓨팅연구소 |
| 35. 생물산업기술연구소 | 36. 소재경량화 TIC |
| 37. 광과학기술연구소 | 38. 청정기반기술연구소 |
| 39. 나노하이테크연구센터 | 40. 수퍼지능기술연구소 |
| 41. IT신기술연구소 | 42. 항공우주연구정보센터 |
| 43. 초정밀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 | 44. 컴퓨터이셔널일렉트로닉스센터 |
| 45. 광기술교육센터 | 46. EAPap Actuator 연구단 |
| 47. 집적형광자기술연구센터 | 48. 초.광대역무선통신연구센터 |
| 49. 자동차동력계부품기술혁신센터 | 50. 고에너지물질특화연구센터 |
| 51. 열플라즈마환경기술연구센터 | |
| 52. 나노정밀화학융합산업기술개발지원센터 | |
| 53. 스포츠·레저섬유연구센터 | 54. Wireless Innovation 기술연구소 |
| 55. 광양자정보처리연구단 | 56. 문화경영심리연구소 |

- | | |
|------------------|------------------------|
| 57. 중국학연구소 | 58. 영어권문화·언어연구소 |
| 59. 식품안전연구센터 | 60. 국토모니터링기술개발연구센터 |
| 61. 지속가능경영연구소 | 62. 도시계획연구소 |
| 63. 응용수학연구소 | 64. IT융합기술연구소 |
| 65. 인하 PACE 연구센터 | 66. 해양 에너지·환경 융합기술 연구소 |
| 67. 국어문화연구소 | 68. 고성능 LED조명모듈 연구소 |
| 69. 고조선연구소 | 70. 글로벌e거버넌스연구소 |

제3장 수업연한 및 졸업

제8조 (수업연한)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간호학과 제외),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6. 4>

제9조 (졸업) 제8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제26조 2항의 정규등록절차를 마친 학생으로서 제33조에 규정된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당해 학기말에 졸업할 수 있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제8조와 제33조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졸업을 허가한다.

제10조 (조기졸업) ①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4.00이상으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학생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해 줄 수 있다. 다만, 테크노경영석사과정 진학 학생에 대하여는 평점 평균을 3.7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의과대학 학생은 조기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13. 6. 4>

③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 희망학기 개강일 이전에 조기 졸업원을 제출하여 소속 학장(예술체육학부는 학부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 7. 6>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학기) 학년은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다만, 계절학기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4개 학기 범위 내에서 이를 나눌 수 있고 학사운영상 필요할 때는 2주 범위 내에서 각 학기의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13조 (수업일수 및 방법) ① 수업은 매 학년도 32주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4조 (정기휴업) ① 정기휴업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② 정기휴업기간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으로 하며 그 기간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임시휴업) 입학고사, 졸업식 및 기타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의 변경과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16조 (휴업 중 수업) 휴업중에도 계절학기 수업, 실험·실습 수업 등 필요한 수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신·편입학과 전과, 등록과 수강신청

제17조 (입학시기) 입학허가 시기는 학년초부터 4주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과 편입학, 외국인학생의 신입학 및 시간제등록생은 학기초부터 4주이내로 한다.

제18조 (신입학지원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9조 (신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모집시에 공고한다.

제20조 (입학전형) ① 신입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1.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3. 대학별고사 성적
4. 실기고사 성적
5. 교직적성·인성검사 성적
6. 면접고사 성적
7. 자기소개서
8. 신체검사

9. 기타사항

② 문학·어학·수학·과학·체육 및 예능 등 각 분야 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며, 해당학년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중 1, 2학년에서 제적된 인원이내에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향의 지원자는 대학에서 4학기이상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또는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3학년 편입자는 전후기 입학전형에 관계없이 4개학기를 전적대학 이수학기로 인정한다.

④ 편입학 전형에 관한 지원자격, 지원절차 및 전형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모집시에 공고한다.

제23조 (학사편입학)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게 허용하되, 그 숫자는 제3학년 입학 총정원의 5%이내, 해당 학부(과) 입학정원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정원외로 허가한다.

제24조 (전과) 전과는 2, 3학년에 한해 허용하며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입학허가) <삭 제>

제26조 (등록) ① 신입생, 편입생 및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기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조기 졸업자를 제외하고 8학기이상(다만, 건축학과 10학기, 의예과 4학기, 의학과 8학기)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③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및 시간제등록생은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수강과목의 신청 및 변경) ① 재학생은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전담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교과 및 학점

제28조 (교과과정) ① 각 대학의 교과목은 교양, 전공 및 일반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공과대학 및 IT공과대학의 각 학부(과)는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3. 6. 4>

제29조 (교과과정 심의) 각 대학 학부(과)의 교과과정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0조 (학점)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6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교과목은 32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인턴십)교과목은 32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③ 이수단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 (학점인정) ① 본 대학교 학생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본 대학교 입학 후 졸업 잔여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공과대학 및 IT공과대학으로 편입학, 재입학 및 전과한 학생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사항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입학 전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 3>

제31조 (부전공) ① 부전공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 제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복수전공) ① 학생은 소속 학부(과)나 다른 학부(과)에서 하나이상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전공과목을 42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1 (연계전공 및 복합전공) ① 2개이상의 학부(과)가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과 본인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졸업시 심사받아 전공을 인정받는 「복합전공」을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연계전공 및 복합전공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전공과목을 42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학칙에 정한 졸업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에게는 [별표2-2] 또는 [별표2-3]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0. 7. 6, 2011. 3. 23, 2012. 6. 22, 2013. 1. 3, 2013. 6. 4, 2014. 2. 11>

③ 연계전공과 복합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 (졸업학점) ①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이상으로 한다. 단, 의과대학

의학과는 150학점,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165학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학생의 경우는 졸업학점을 12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② 졸업이수학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시험과 성적

제34조 (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응시자격 상실) 교과목별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으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36조 (성적평가) ① 성적은 시험결과, 출결상황, 과제평가,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② 성적은 다음 등급으로 사정하되 D₀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한다.

등 급	평 가	등 급	평 가
A+	4.50	C ₀	2.00
A ₀	4.00	D+	1.50
B+	3.50	D ₀	1.00
B ₀	3.00	F	0
C+	2.50		

③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업성적을 급제(Pass)/낙제(Fail)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급제(Pass)는 학점에만 포함하고, 낙제(Fail)는 평점평균 산출 시 “F”학점으로 적용한다.

제37조 (추가시험) 학생이 질병, 입대, 소집, 사고, 교육실습, 운동경기 출전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8조 (학점 및 졸업취소) 일단 결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이를 취소하며 졸업후 그와 같은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졸업과 학사학위를 취소한다.

제8장 이수의 인정, 유급 및 졸업

제39조 (수강학점) ① 정규등록을 한 학생 중 졸업학점이 132학점 이하인 학부(과)

의 경우는 매학기 16학점이상 19학점까지, 졸업학점이 135학점 이상인 학부(과)의 경우는 매학기 16학점이상 20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② 정규등록을 7차 이상(단, 건축학과는 9차 이상) 한 경우에는 12학점 이상 수강할 수 있으며, 다만 졸업학기(일반학부(과) 8차, 건축학과 10차)의 최소 수강학점은 3학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6. 4>

③ 직전학기 16학점(졸업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F학점 없이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학생 또는 테크노경영프로그램에 이수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3.70이상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강신청기준 상한학점보다 3학점 이내에서 초과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에 취득한 현장실습 이수학점,국제교류 취득학점은 수강신청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6. 4>

④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30학점까지, 간호학과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2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0. 7. 6, 2010. 10. 11>

⑤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이며, 재학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단 방학중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계절학기 취득 학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삭제 2013. 6. 4>

⑦ 대학원과 공동개설하여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중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산입되지 아니한 전공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당해 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6학점까지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⑧ 본 대학교와 협정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은 본 대학교의 대학, 대학원이 공동개설한 교과과정에 따라 6학점의 범위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증명을 교부할 수 있다.

⑧ 본 대학교 학생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과 국내·외 다른 대학교 학생이 본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⑩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⑪ 현장실습(인턴십)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⑫ 학기제 현장실습(인턴십)은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⑬ 방학제 현장실습(인턴십)은 1회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⑭ 국제교류학생은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수강신청 학점을 19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⑮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휴학생은 학칙 제13조(수업일수 및 방법)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e-러닝")을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⑯ 고등학교 재학 중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3호에 따라 취득한 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

로 정한다.

제40조 (수료학점 인정) ① 학년구분은 취득한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학년은 32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2. 제2학년은 33학점이상 65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단, 의예과는 78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3. 제3학년은 66학점이상 98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4. 제4학년은 99학점이상 해당 학부(과) 졸업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5. 건축학과의 제5학년은 131학점이상 해당 학과의 졸업학점을 취득할 때까지<개정 2013. 6. 4>

②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위 제1항의 각호의 상한학점이상을 취득하였을 때를 학년 수료로 인정한다.

제41조 (학사경고 및 유급) ① 재학생으로서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1.70에 미달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② 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본인이 유급을 희망하며,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에게는 유급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은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학기별 성취도에 따라 유급 시킨다.

④ 위 각항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 (졸업요건) ① 제33조에 정한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하여 학사학위 [별표2-1] 와 졸업증서 [별표3] 를 수여한다.<개정 2010. 7. 6, 2012. 1. 9, 2012. 6. 22, 2013. 1. 3, 2013. 6. 4>

② 200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및 2002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부터 ‘인하졸업인증제’를 적용한다.

③ 전항의 졸업논문 및 ‘인하졸업인증제’ 등에 관한 시행규정은 따로 정한다.

④ 공과대학 및 IT공과대학의 학생이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칙 및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별표2-4] 와 졸업증서 [별표3] 을 수여한다. 단 1항의 요건으로 학사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6, 2012. 1. 9, 2013. 6. 4>

제9장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및 퇴학

제43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해서 한 학기이상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휴학기간) ① 휴학 자는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입영통지서를 받은 즉시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복학) 휴학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제46조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3.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제47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제적 또는 자퇴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한다.

② 학칙 제46조에 의거 제적된 자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칙 제48조에 의거 자퇴한 자는 제적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경과 후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0. 7. 6>

③ 재입학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입학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재입학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 (자원퇴학)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 등으로 본인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49조 (포상) ①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등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의 포상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 또는 대학본부 학생상벌위원회(이하 “학생상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③ 학생상벌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학생상벌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 (징계) ① 학생 본분에 어긋나거나 학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소속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장이 징계처분을 가하고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한다.

② 학생지원처장은 해당 대학장에게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한다.

④ 퇴학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생상벌위원

회 의결로 총장이 행한다.

⑤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본인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학생상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다.

⑥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1장 직 제

제51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51조의2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는 정부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교수회의

제52조 (교수회의) ①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의를 둔다.

② 교수회의는 전체교수회의와 대학교수회의로 나눈다.

제53조 (교수회의 소집) 전체교수회의는 총장이, 대학교수회의는 학장이 소집하며 또한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

제54조 (교수회의 심의사항) ① 전체교수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입학사정에 관한 심의사항
2. 교육정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부의 사항

② 대학교수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학칙변경에 관한 건의사항
2. 졸업 및 수료사정에 관한 사항
3. 당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건의사항
4. 당해 대학의 학생지도와 표창 및 징계심의에 관한 사항
5. 학부(과) 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학부(과)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의 사항

제55조 (의결)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장 교무위원회

제56조 (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 교무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회의에 부의할 사항
2.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의 사항

③ 학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공고기간을 거치고 이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공포한다.

제57조 (구성 및 소집)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정석학술정보관장으로 구성한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4장 시간제등록생, 공개강좌, 학점은행제

제58조 (시간제등록생) ①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에서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과 학점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의1 (공개강좌) ①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의2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여 학점은행제를 시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의3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 30학점이상, 전공 60학점이상을 이수한 자
3. 우리 대학교에서 84학점이상 학점을 이수하고 학칙 제33조에 규정된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기 취득한 학사학위 외에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

교에서 해당 전공학점을 4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④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본 대학교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동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제58조의4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 및 전공) ①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과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칙 제42조제1항의 학위종류 및 전공 [별표 2] 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학위명이 다른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본 대학교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과대학 및 사범대학의 각 전공은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사학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8조의5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제58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본 대학교 총장이 [별표 4] 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2. 6. 22>

제15장 납입금

제59조 (납입금)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학기 및 시간제등록생은 신청학점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0조 (납입금의 면제금지) 납입금은 결석 또는 징계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1조 (납입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할 수 있다.

제16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농·어촌학생 및 장애학생

제62조 (위탁생) 정부 및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3조 (외국인)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제6호, 제7호의 외국인의 경우는 신입학 또는 2학년 및 3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대한 신·편입학 전형에 관한 지원자격, 지원절차 및 전형방법등에 관

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모집시 공고한다.

제63조의1 (농·어촌학생) 농·어촌 학생에게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제63조의2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
이익이 없도록 하고, 교육 및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조직과 제규
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 10. 7>

제17장 학생활동

제64조 (학생자치기구) 학생은 건학정신을 구현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대학문
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회등 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 (학생회의 행사 및 예·결산) 총학생회의 행사 및 예·결산은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 (학생회 임기) 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를 원칙으로 한다.

제67조 (학생생활지도)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8조 (학생활동의 신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는 소
속 대학장 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행위를 할 때는 학생지
원처의 등록을 필하고 제2호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목적, 일시, 장소, 예상 인원
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과외활동 단체 조직
2. 학교시설물의 이용
3. 학내광고, 인쇄물 부착 또는 배포
4. 외부인사의 학내초빙
5. 학생활동에 있어서 외부의 후원 또는 시상의뢰

제69조 (학생간행물) 학생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 (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학사행정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
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1조 (학생회비의 집행) 학생회비는 학교회계 절차에 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72조 (징계) <삭 제>

제18장 자체평가

제73조 (자체평가) ①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에 의거,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5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1958년 1월25일 개정)은 195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학칙(1958년 2월16일 개정)은 195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0년 4월12일 개정, 1960년 2월 20일 개정)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0년 4월12일 개정)은 1960년 4월12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2년 4월12일 개정)은 1962년 4월1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3년 3월 1일 개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3년 2월16일 개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3년 2월16일 개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의 시행당시에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부설 종합직업학교 직업교육전공부 졸업자는 이 학칙에 의하여 편입학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10.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4년 2월 3일 개정)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4년 7월28일 개정)은 1964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5년 2월21일 개정)은 1965년 9월2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6년 2월 2일 개정)은 1966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6년12월28일 개정)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7년11월 2일 개정)은 1967년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7년12월 6일 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8년12월26일 개정)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9년 4월25일 개정)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1969년12월24일 개정)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과목 변경 및 폐과 학교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학칙(1970년12월31일 개정)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학칙(1971년 8월 9일 개정)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학칙(1971년10월20일 개정)은 1971년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학칙(1971년12월21일 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학칙(1973년 1월 9일 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학칙(1973년12월31일 개정)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학칙(1975년 3월 1일 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학칙(1975년 8월 1일 개정)은 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79년11월19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0년 6월16일부터 시행한다.
35. ①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198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0학년도 이전 입학 자에 대하여는 이 학칙 중 제22조 내지 제2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경과조치) 1980년도 이전에 대학 2부에 입학하여 1학기이상 이수한 자의 졸업 학점은 과거 학칙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학기	이수자	142학점
2학기	이수자	144학점
3학기	이수자	146학점
4학기	이수자	148학점
5학기	이수자	150학점
6학기	이수자	152학점
7학기	이수자	154학점

④ (경과조치) 1980학년도 이전에 사범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하고 제1학년을 수료하지 못하여 학과 배정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복학할 경우 원에 따라 입학 당시 인문 사회계열의 설치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에 정원에 관계없이 배치한다.

⑤ (경과조치) 1980학년도 이전 사범대학 재학생이 1981년 3월 1일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경우 재학 당시의 소속학과가 폐과 되었으면 문과대학의 해당학과에 전과 조치하되, 이들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1년 5월 6월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 2)중 행정학과의 수여학위 중별에 대하여는 1981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36조의 학업성적의 평가방법은 1982학년도 제1학기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이미 취득한 성적은 개정 전 학업성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④ (경과조치) 1981학년도 이전 계열별로 입학한 학생중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따라 학과별로 배치한다.

37.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별도로 이를 정한다.
39.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별표 2) 중 체육교육과의 수여학위종별에 관한 규정은 1983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40.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1.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1292호 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47조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용한다.
42.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3은 1985년 3월 1일 부터 실시한다.
 ② (경과조치) 1. 1981년 2월말 이전에 입학한자로서 군입대 및 미등록 제적된 자는 대학생 정원령 제3조제3호에 의거 학칙 제47조의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4.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5.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46.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7. (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 12237호 1987. 8. 29) 부칙 제3항에 의거 1983년 12월 2일부터 1987년 7월 10일까지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3조, 제47조와 부칙 제44조제2항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8.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야간강좌 개설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연도까지 존속한다.
 ③ (경과조치) 학칙개정 당시 학과명이 변경된 조선공학과, 일어일문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학과명칭 이 개정된 선박해양공학과, 일어일본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1988학년도 졸업생은 예외로 한다.
 ④ (경과조치) 학과명이 변경된 중어중문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한다. 다만, 해당학과 1학년 복학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⑤ (경과조치) 졸업정원제가 입학정원제로 전환됨에 따라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의학과, 199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3조, 제23조, 제24조, 제3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4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개정 당시 이과대학 전자계산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

학 전자계산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1989학년도 졸업생은 예외로 한다.

50.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과명이 변경된 항공공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한다. 다만, 해당학과 1학년 복학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2.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학칙 시행 이전의 학사경고하는 제46조(제적)제5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변경 당시 학과명이 변경된 응용물리학과, 전자계산학과와 제적중인 학생은 학과명칭이 변경된 전자재료공학과, 전자계산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1989학년도 졸업생은 예외로 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3학년도 전 입학자는 학칙 제33조, 제3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법학과 1학년 복학생은 개정학칙을 적용받는다.
57.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58.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47조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59.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60.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2.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63.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9월 7일부터 시행하되, 공과대학 기계·항공·자동화공학부, 화공·고분자·생물공학부 및 경상대학 경영학부는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자동화공학과, 화학

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생물공학과 및 항공우주·자동화공학과군 입학생의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휴학 등으로 잔류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시 이들 학과가 항공우주·자동화공학과군, 기계·항공·자동화공학부, 화공·고분자·생물공학부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개정규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시 학과명칭을 입학 당시의 학과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전공학점 이수에 따라 학과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1995학년도 이전 경영학과, 회계학과, 상업교육과 입학생의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시 학과 명칭을 입학당시의 학과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전공학점 이수에 따라 학과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④ 1995학년도 이전 상업교육과로 입학한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원할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6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과대학 지리정보공학과,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는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개정 당시 공과대학 항공탐사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지리정보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1995학년도 이전 경제학과, 무역학과 입학생의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개정학칙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시 학과명칭을 입학 당시의 학과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전공학점 이수에 따라 해당학과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66.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67.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되, 공과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는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 학칙 개정당시 산업기술대학원 및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에 在籍중인 학생은 1997년 3월 1일부터 산업대학원 및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1997학년도 이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전자계산공학과 입학생의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휴학 등으로 잔류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 시 이들 학과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개정규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시 학과명칭을 입학당시의 학과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졸업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학과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68.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8년 2월 16일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6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8년 7월 7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법정대학 재적중인 학생은 1998년 9월1일부터

법학과, 산업재산권학과(야간) 학생은 법과대학으로,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야간) 학생은 사회과학대학으로, 가정대학 학생은 생활과학대학 학생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70.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8년 10월 15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7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5월 31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1999학년도 이전에 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변경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복학 또는 재입학 등으로 이들 학과가 학부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소속이 바뀐 것으로 보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졸업시 학과명칭을 입학 당시의 학과 명칭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졸업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학과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72.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1월 26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73.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7월 3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2001학년도 이전 학과 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 등으로 이들 학과 및 학부가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속이 바뀐 것으로 보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졸업시 입학당시의 학과명 및 학부의 소속 전공 명칭으로 졸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졸업학점 이수여부에 따라 학과 및 전공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2. 2001학년도 정원조정으로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의 정보통신공학전공이 정보통신공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2000학년도 이전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2001학년도 2학년으로 진급 시에 한하여 정보통신공학부로 소속변경을 희망할 경우 학생의 청원을 받아 들어 소속학부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 소속을 변경 처리한다.

3. 경제학부 및 국제통상학부로 분리된 경제통상학부는 2001학년도 2학년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며, 2001학년도 이후 복학하는 학생은 학생의 청원을 받아 경제학부 및 국제통상학부로 소속을 변경 처리한다.

4. 2001학년도 정원조정으로 경제통상학부의 국제통상학전공이 국제통상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2000학년도에 경제통상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으로 진급시 국제통상학부로 소속변경을 희망할 경우 학생의 청원을 받아 소속학부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 소속을 변경처리 한다.

74. 이 변경학칙은 2002년 2월 6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75.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10월 22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1일 현재 경상대학 경영학부 재적생에 대해서는 경영대학 경영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2003학년도 수시 모집한 경상대학 경영학부의 최종등록자가 입학할 시에는 경영대학 경영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76. 이 변경학칙은 2003년 2월 27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77. 이 변경학칙은 2003년 10월 24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78.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3년 12월 31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7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7월 29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개정학칙의 공포일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학칙변경(2004.1.14)에 의거, 「산업대학원」이 「공학대학원」으로 명칭 변경됨. 이에 따라, 교내의 산업대학원 명칭을 2004년 3월 1일자로 「공학대학원」으로 변경함.
2. 제32조(복수전공) 2항 및 32조의1(연계전공 및 복합전공) 2항의 기준 학점은 2005학년도 복수, 연계 및 복합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3. 제40조(수료학점 인정) 1항 2호의 의예과 수료학점 인정은 2004학년도 신입생 및 1학년 1학기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80.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로 이과대학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으로, 문과대학은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동양어문학부, 서양어문학부, 인문학부 학생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2항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2004학년도 후기 졸업생에 대하여는 전기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적기록부 등에 이과대학 및 문과대학 인문학부 소속으로 표기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2.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33조 1항 및 제39조 3항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이전 국제통상학부 입학생 및 2008학년도 이전 편입생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50학점으로 하며, 한 한기에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8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개정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39조 2항 및 3항은 200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다.
85.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칙 제1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개정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학칙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4항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2. 학칙 제40조(수료학점)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3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학칙 제39조(수강학점) 4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다.

② 아태물류학부의 경영대학 편입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2항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 후기 졸업생에 대하여는 전기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적기록부 등에 아태물류학부 소속으로 표기한다.

부 칙<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선박해양전공의 조선해양공학 명칭개정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 후기 졸업생에 대하여는 전기 졸업생과 동일하게 학적기록부 등에 선박해양전공 소속으로 표기한다.

부 칙<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학칙 제39조(수강학점) 4항 간호학과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2010학년도 2학기부터 23학점 까지 수강할 수 있다.

부 칙<2011. 2. 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과대학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법과대학은 2017년 2월까지 유지한다. 다만, 2017년 3월 이후에도 법과대학에 남아있는 재적생은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 칙<2013. 5.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개정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모집단위 개편 및 이에 관련하여 개정된 학칙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 39조 6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폐지 전 규정에 따라 2013년도에 한하여 특별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4. 2.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2012학년도 입학정원

대학	모 집 단 위	전 공	입학정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 계 공 학	157
	항공·조선·산업공학부	항 공 우 주 공 학	190
		조 선 해 양 공 학	
		산 업 공 학	
	생명화학공학부	화 학 공 학	125
		생 명 공 학	
	나노시스템공학부	고분자신소재공학	98
		섬유신소재공학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122
	사회기반시스템 공학부	토 목 공 학	177
		환 경 공 학	
		지 리 정 보 공 학	
I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계열	전 자 공 학	190
		전 기 공 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	160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	120
	소 계		470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부	수 학	80
		통 계 학	
	물리화학부	물 리 학	90
		화 학	
	생명해양과학부	생 명 과 학	80
		해 양 과 학	
	소 계		250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 제 학	80
	국제통상학부	국 제 통 상 학	90
	소 계		170

대학	모 집 단 위	전 공	입학정원
경영 대학	경 영 학 부	경 영 학	200
	글로벌금융학부	글로벌금융학	50
	아태물류학부	물 류 학	100
	소 계		350
사범 대학	국 어 교 육 과	국 어 교 육	40
	영 어 교 육 과	영 어 교 육	40
	사 회 교 육 과	사 회 교 육	40
	교 육 학 과	교 육 학	40
	체 육 교 육 과	체 육 교 육	50
	수 학 교 육 과	수 학 교 육	40
	소 계		250
사회 과학 대학	사 회 과 학 부	행 정 학	242
		정치외교학	
		언론정보학	
	소 계		242
문과 대학	국 제 언 어 문 화 학 부	중 국 언 어 문 화	241
		일 본 언 어 문 화	
		영 어 영 문 학	
		프 랑 스 언 어 문 화	
	인 문 학 부	한 국 어 문 학	117
		사 학	
		철 학	
	문 화 콘 텐 츠 학 부	문 화 콘 텐 츠	85
		문 화 경 영	
	소 계		443
생활 과학 대학	생 활 과 학 부	소 비 자 아 동 학	140
		식 품 영 양 학	
		의 류 디 자 인 학	
	소 계		140
의과 대학	간 호 학 과	간 호 학	80
	소 계		80
예술체육학부		생 활 체 육	50
		시각정보디자인	30
		미 술	30
		연 극 영 화	30
소 계			140
총 계			3,529

[별표 1-2]

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학	모 집 단 위	전 공	입학정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 계 공 학	157
	항공·조선·산업공학부	항 공 우 주 공 학	190
		조 선 해 양 공 학	
		산 업 공 학	
	생명화학공학부	화 학 공 학	125
		생 명 공 학	
	나노시스템공학부	고분자신소재공학	98
		섬유신소재공학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122
	사회기반시스템 공학부	토 목 공 학	177
		환 경 공 학	
		지 리 정 보 공 학	
I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계열	전 자 공 학	190
		전 기 공 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	160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	120
	소 계		470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부	수 학	80
		통 계 학	
	물리화학부	물 리 학	90
		화 학	
	생명해양과학부	생 명 과 학	80
		해 양 과 학	
경상대학	소 계		250
	경 제 학 부	경 제 학	80
	국제통상학부	국 제 통 상 학	90
	소 계		170

대학	모 집 단 위	전 공	입학정원
경영대학	경 영 학 부	경 영 학	200
	글로벌금융학부	글로벌금융학	50
	아태물류학부	물 류 학	100
	소 계		350
사범대학	국 어 교 육 과	국 어 교 육	40
	영 어 교 육 과	영 어 교 육	40
	사 회 교 육 과	사 회 교 육	40
	교 육 학 과	교 육 학	40
	체 육 교 육 과	체 육 교 육	50
	수 학 교 육 과	수 학 교 육	40
	소 계		250
사회과학대학	사 회 과 학 부	행 정 학	239
		정치외교학	
		언론정보학	
	소 계		239
문과대학	국 제 언 어 문 화 학 부	중 국 언 어 문 화	241
		일 본 언 어 문 화	
		영 어 영 문 화	
		프 랑 스 언 어 문 화	
	인 문 학 부	한 국 어 문 화	117
		사 학	
	문 화 콘 텐 츠 학 부	철 학	85
		문 화 콘 텐 츠	
	소 계		443
생활과학대학	생 활 과 학 부	소 비 자 아 동 학	140
		식 품 영 양 학	
		의 류 디 자 인 학	
	소 계		140
의과대학	간 호 학 과	간 호 학	80
	소 계		80
예술체육학부		생 활 체 육	50
		시각정보디자인	30
		미 술	30
		연 극 영 화	30
소 계			140
총 계			3,529

[별표 1-3]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학	2014학년도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공과 대학	기계공학과	150
	항공우주공학과	50
	조선해양공학과	71
	산업경영공학과	60
	화학공학과	80
	생명공학과	50
	고분자공학과	52
	유기응용재료공학과	46
	신소재공학과	120
	사회인프라공학과	82
	환경공학과	55
	지리정보공학과	44
	건축공학과	48
	건축학과	46
	에너지자원공학과	32
	융합기술경영학부	3
	소 계	989
IT 공과 대학	전자공학과	105
	전기공학과	93
	컴퓨터정보공학과	156
	정보통신공학과	120
	소 계	474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44
	통계학과	40
	물리학과	46
	화학과	56
	생명과학과	44
	해양과학과	41
	소 계	271
경상 대학	경제학과	76
	국제통상학과	85
	소 계	161
대학	2014학년도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경영 대학	경영학과	186
	글로벌금융학과	48
	아태물류학부	95
	소 계	329
사범 대학	국 어 교 육 과	40
	영 어 교 육 과	40
	사 회 교 육 과	40
	교 육 학 과	40
	체 육 교 육 과	50
	수 학 교 육 과	40
	소 계	250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86
	정치외교학과	68
	언론정보학과	68
	소 계	222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과	49
	영어영문학과	71
	프랑스언어문화학과	45
	중국어언어문화학과	64
	일본언어문화학과	59
	사학과	40
	철학과	38
	문화콘텐츠학과	41
	문화경영학과	44
	소 계	451
생활 과학 대학	소비자학과	24
	식품영양학과	48
	아동학과	25
	의류디자인학과	50
	소 계	147
의과 대학	간 호 학 과	80
	소 계	80
예술체육학부	스포츠과학	65
	시각정보디자인	30
	미 술	30
	연극영화	30
소 계		155
총 계		3,529

[별표 1-4]

2015학년도 입학정원

대학	2015학년도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150
	항공우주공학과	50
	조선해양공학과	71
	산업경영공학과	60
	화학공학과	80
	생명공학과	50
	고분자공학과	52
	유기응용재료공학과	46
	신소재공학과	120
	사회인프라공학과	82
	환경공학과	55
	지리정보공학과	44
	건축공학과	48
	건축학과	46
	에너지자원공학과	32
	융합기술경영학부	3
	소 계	989
IT공과대학	전기공학과	93
	전자공학과	105
	컴퓨터정보공학과	156
	정보통신공학과	120
	소 계	474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44
	통계학과	40
	물리학과	46
	화학과	56
	생명과학과	44
	해양과학과	41
	소 계	271
경상대학	경제학과	76
	국제통상학과	85
	소 계	161

대학	2015학년도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경영대학	경영학과	186	
	글로벌금융학과	48	
	아태물류학부	95	
사범대학	소 계	329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사회교육과	40	
	체육교육과	50	
	교육학과	40	
	수학교육과	40	
	소 계	250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86
정치외교학과		68	
언론정보학과		68	
소 계		222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49	
	사학과	40	
	철학과	38	
	중국언어문화학과	64	
	일본언어문화학과	59	
	영어영문학과	71	
	프랑스언어문화학과	41	
	문화콘텐츠학과	40	
	문화경영학과	40	
	소 계	442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24
		식품영양학과	48
아동학과		25	
의류디자인학과		50	
소 계		147	
의과대학	의예과	34	
	간호학과	80	
	소 계	114	
예술체육학부		스포츠과학	65
		시각정보디자인	30
		미술	30
		연극영화	30
소 계		155	
총 계		3,554	

[별표 2-1]

각 대학의 전공별 수여학위의 종별

대학	학 부, 계 열, 학 과	전 공	학 위 명
공 과 대 학	기계·항공·자동화공학부	기계·항공·자동화공학 기 계 공 학 항 공 우 주 공 학 자 동 화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기 계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공 학 사
	항공우주자동화공학군	항공우주·자동화공학 항 공 우 주 공 학 자 동 화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항 공 우 주 공 학 과	항 공 우 주 공 학	공 학 사
	조 선 해 양 공 학 과	조 선 해 양 공 학	공 학 사
	산 업 경 영 공 학 과	산 업 경 영 공 학	공 학 사
	자 동 화 공 학 과	자 동 화 공 학	공 학 사
	화공·고분자·생물공학부	화공·고분자·생물공학 화 학 공 학 고 분 자 공 학 생 물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화 학 공 학 과	화 학 공 학	공 학 사
	생 명 공 학 과	생 명 공 학	공 학 사
	고 분 자 공 학 과	고 분 자 공 학	공 학 사
	유 기 응 용 재 료 공 학 과	유 기 응 용 재 료 공 학	공 학 사
	생 물 공 학 과	생 물 공 학	공 학 사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전 자 공 학 전 기 공 학 전기 및 제어공학 반 도 체 공 학 컴 퓨 터 공 학 전 자 전 기 공 학 컴 퓨 터 · 정 보 공 학 정 · 통 신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전 자 전 기 공 학 부	전 자 공 학 전 기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정 보 통 신 공 학 부	정 보 통 신 공 학	공 학 사
	컴 퓨 터 공 학 부	컴 퓨 터 공 학	공 학 사
	정 보 공 학 계 열	컴 퓨 터 정 보 공 학 정 보 통 신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전 기 공 학 과	전 기 공 학	공 학 사
	전 자 공 학 과	전 자 공 학	공 학 사
	전 자 재 료 공 학 과	전 자 재 료 공 학	공 학 사
	전 자 계 산 공 학 과	전 자 계 산 공 학	공 학 사
	선 박 해 양 공 학 과	선 박 해 양	공 학 사
	산 업 공 학 과	산 업 공 학	공 학 사
	섬 유 공 학 과	섬 유 공 학	공 학 사
	환 경 공 학 과	환 경 공 학	공 학 사

대학	학 부, 계 열, 학 과	전 공	학 위 명
공 과 대 학	무 기 재 료 공 학 과	무 기 재 료 공 학	공 학 사
	금 속 공 학 과	금 속 공 학	공 학 사
	자 원 공 학 과	자 원 공 학	공 학 사
	토 목 공 학 과	토 목 공 학	공 학 사
	사 회 인 프 라 공 학 과	사 회 인 프 라 공 학	공 학 사
	건 축 공 학 과	건 축 공 학	공 학 사
	지 리 정 보 공 학 과	지 리 정 보 공 학	공 학 사
	기 계 계 열	기 계 계 열 기 계 공 학 항 공 우 주 공 학 자 동 화 공 학 선 박 해 양 공 학 산 업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기계공학부	기 계 공 학 부 기 계 공 학 항 공 우 주 공 학 선 박 해 양 공 학 조 선 해 양 공 학 산 업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기계공학부	기 계 공 학	공 학 사
	항공 · 조선 · 산업공학부	항 공 우 주 공 학 조 선 해 양 공 학 산 업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응용화학계열	응 용 화 학 계 열 응 용 화 학 공 학 고 분 자 공 학 생 물 공 학 섬 유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화학공학부	화 학 공 학 부 화 학 공 학 고 분 자 공 학 생 물 공 학 섬 유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화공생명공학부	화 공 생 명 공 학 부 화 공 생 명 공 학 고 분 자 공 학 생 명 공 학 섬 유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생명화학공학부	생 명 화 학 공 학 부 생 명 화 학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나노시스템공학부	나 노 시 스템 공 학 부 고 분 자 신 소 재 공 학 섬 유 신 소 재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재료공학부	재 료 공 학 부 무 기 재 료 공 학 세 라 믹 공 학 금 속 공 학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공 학 사
	신소재공학부	신 소 재 공 학 부	공 학 사

대학	학 부, 계 열, 학 과	전 공	학 위 명
공과대학		세라믹공학 금속공학 신소재공학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공학사
	지구환경공학부	지구환경공학	공학사
	환경토목공학부	토목공학 지구환경공학 환경공학 지리정보공학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토목 및 지리정보공학부	지리정보공학 토목공학	공학사 공학사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 환경공학 지리정보공학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건설공학부	건축공학 토목공학 지리정보공학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건축학부	건축공학 건축학	공학사 건축학사
	건축학과	건축학	건축학사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	공학사
	융합기술경영학부	기계산업경영융합과정 기계IT융합과정 IT산업경영융합과정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I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계열	전자공학 전기공학	공학사 공학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사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공학사
	정보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공학 정보통신공학	공학사 공학사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	공학사
	컴퓨터정보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	공학사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	공학사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공학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수학	이학사
	통계학과	통계학	이학사
	물리학과	물리학	이학사
	화학학과	화학	이학사
	생물학과	생물학	이학사
	해양학과	해양학	이학사
	수학·통계학부	수통계학	이학사 이학사
	물리·화학부	물리화학	이학사 이학사
	생물·해양학부	생해물양학	이학사 이학사

대학	학 부, 계 열, 학 과	전 공	학 위 명
	자연과학계열	물리 화학 생물 화학 해양 생물 해양 화학	이화사 이화사 이화사 이화사
	물리화학부	물리 화학	이화사 이화사
	생명해양과학부	생명 과학 해양 과학	이화사 이화사
	생 명 과 학 과	생 명 과 학	이 화 사
	해 양 과 학 과	해 양 과 학	이 화 사
	기초의과학부	기 초 의 과 학	이 화 사
경상대학	경 제 학 부	경 제 학	경 제 학 사
	국 제 통 상 학 부	국 제 통 상 학	국제통상학사
	경 영 학 부	경 영 학	경 영 학 사
	경 영 학 과	경 영 학	경 영 학 사
	회 계 학 과	회 계 학	경 영 학 사
	상 업 교 육 과	상 업 교 육 학	경 영 학 사
	경 제 통 상 학 부	경 제 통 상 학 국 제 통 상 학	경 제 학 사 경 제 학 사 국제통상학사
	경 제 학 과	경 제 학	경 제 학 사
	국 제 통 상 학 과	국 제 통 상 학	국제통상학사
	무 역 학 과	무 역 학	경 제 학 사
경영대학	경 영 학 부	경 영 학	경 영 학 사
	경 영 학 과	경 영 학	경 영 학 사
	글 로 벌 금 융 학 부	글 로 벌 금 융 학	경 영 학 사
	글 로 벌 금 융 학 과	글 로 벌 금 융 학	경 영 학 사
	아 태 물 류 학 부	물 류 학	물 류 학 사
사범대학	국 어 교 육 과	국 어 교 육	문 학 사
	영 어 교 육 과	영 어 교 육	문 학 사
	사 회 교 육 과	사 회 교 육	문 학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문 학 사
	수 학 교 육 과	수 학 교 육	이 학 사
	체 육 교 육 과	체 육 교 육	체 육 학 사
	미 술 교 육 과	미 술 교 육	미 술 학 사
법과대학	법 학 부	법 지 적 재 산 권 학	법 학 사 법 학 사
	법 학 과	법 학	법 학 사
	산업재산권학과	산 업 재 산 권 학	법 학 사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 정 학 정 치 외 교 학 언 론 정 보 학	행 정 학 사 정 치 학 사 언 론 정 보 학 사
	행정학과	행 정 학	행 정 학 사
	정치외교학과	정 치 외 교 학	정 치 학 사
	언론정보학과	언 론 정 보 학	언 론 정 보 학 사
문	국 어 국 문 과	국 어 국 문 학	문 학 사

대학	학 부, 계 열, 학 과	전 공	학 위 명
과 대 학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문 학	문 학 사
	영 어 영 문 학 과	영 어 영 문 학	문 학 사
	불 어 불 문 학 과	불 어 불 문 학	문 학 사
	독 어 독 문 학 과	독 어 독 문 학	문 학 사
	중 국 어 중 국 학 과	중 국 어 중 국 학	문 학 사
	일 어 일 본 학 과	일 어 일 본 학	문 학 사
	사 학 과	사 학	문 학 사
	철 학 과	철 학	문 학 사
	인 문 학 부	국 어 국 문 학	문 학 사
		영 어 영 문 학	문 학 사
		불 어 불 문 학	문 학 사
		프 랑 스 문 화 학	문 학 사
		독 어 독 문 학	문 학 사
		중 국 어 중 국 학	문 학 사
		일 어 일 본 학	문 학 사
		사 철 학	문 학 사
		문 화 콘 텐 츠	문 학 사
	동 양 어 문 학 부	한 국 어 문 학	문 학 사
	서 양 어 문 학 부	중 국 어 중 국 학	문 학 사
		일 어 일 본 학	문 학 사
	인 문 학 부	영 어 영 문 학	문 학 사
		프 랑 스 문 화 학	문 학 사
	국제언어문화학부	독 일 언 어 문 화	문 학 사
		사 철 학	문 학 사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문 화 콘 텐 츠	문 학 사
		중 국 언 어 문 화	문 학 사
	중국언어문화학과	일 본 언 어 문 화	문 학 사
		영 어 영 문 학	문 학 사
	일본언어문화학과	프 랑 스 언 어 문 화	문 학 사
		문 화 경 영	문 학 사
	문화콘텐츠학부	문 화 콘 텐 츠	문 학 사
		문 화 콘 텐 츠	문 학 사
	문화콘텐츠학과	문 화 경 영	문 학 사
		문 화 경 영	문 학 사
	문화경영학과	한 국 어 문 학	문 학 사
		사 철 학	문 학 사
생활 과학 대학	소비자아동학과	소 비 자 아 동 학	가 정 학 사
	식 품 영 양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가 정 학 사
	의 류 학 과	의 류 학	가 정 학 사
	생 활 과 학 부	소 비 자 아 동 학	가 정 학 사
		식 품 영 양 학	가 정 학 사
		의 류 학	가 정 학 사
		생 활 디 자 인 학	가 정 학 사
		의 류 디 자 인 학	가 정 학 사

대학	학 부, 계 열, 학 과	전 공	학 위 명
	생 활 과 학 부	소 비 자 아 동 학 식 품 영 양 학 의 류 디 자 인 학	생 활 과 학 사 생 활 과 학 사 생 활 과 학 사
	소비자학과	소비자학	생 활 과 학 사
	아동학과	아동학	생 활 과 학 사
	식품영양학과	식 품 영 양 학	생 활 과 학 사
	의류디자인학과	의 류 디 자 인 학	생 활 과 학 사
의과 대학	의 학 과	의 학	의 학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간 호 학 사
아태물류학부		물 류 학	물 류 학 사
예술체육학부		생 활 체 육	체 육 학 사
		스포츠과학	체 육 학 사
		시각정보디자인	미 술 학 사
		미 술	미 술 학 사
		연 극 영 화	문 학 사

[별표 2-2]

각 연계전공 수여학위 종별

연계전공명	주관학부(과, 전공)	연계대학, 학부(과), 전공	수여학위
국제통상전문가과정	국제통상학부	중국어언어문화, 일본언어문화	국제통상학사
금융공학	글로벌금융학과	통계학과	금융공학사
금융분석	통계학과	경영학과	금융분석학사
정보분석	통계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정보분석학사
문예창작	문화콘텐츠학과	한국어문학과, 철학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중국어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문학사
외식산업경영	식품영양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사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부	전자공학, 전기공학, 컴퓨터정보공학, 정보통신공학	공학사
아동과학지도	소비자아동학	물리, 화학, 생물, 생명과학, 해양과학	아동과학지도학사
아동체육지도	소비자아동학	체육교육과	아동체육지도학사
국제지역학	정치외교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과, 중국어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국제지역학사
멀티미디어	언론정보학과	시각정보디자인, 미술, 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학사
공통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해양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해양과학과	이학사
공동사회	사회교육과	사학과	문학사
도덕·윤리	교육학과	철학과	문학사
광정보통신	물리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광정보통신학사
나노공학	고분자공학과	공과대학, IT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나노공학사
경영법학	법학	경영학과	경영법학사
과학기술법학	지적재산권학	공과대학, IT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법학사
항공전자	항공우주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공학사
생물정보학	생명과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통계학과	생물정보학사
자연환경관리학	생명과학과	지리정보공학과, 환경공학과	자연환경관리학사

연계전공명	주관학부(과, 전공)	연계대학, 학부(과), 전공	수여학위
테크노경영학	경영학과	아태물류학부, 공과대학, IT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테크노경영학사
IT경영학	경영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IT경영학사
물류법학	법학부	아태물류학부	물류법학사
체형관리	식품영양학과	스포츠과학	체형관리학사
IT물류	아태물류학부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IT물류학사
영미통상	영어영문학과	국제통상학과	영미통상학사
패션비즈니스	의류디자인학과	경영학과	패션비즈니스학사
무대의상디자인	의류디자인학과	연극영화	무대의상디자인학사
패션그래픽디자인	의류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	패션그래픽디자인학사
고객관리	소비자학과	통계학과	고객관리학사
소비문화콘텐츠	소비자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언론정보학과	소비문화콘텐츠학사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학과	법학	소비자분쟁해결학사
지리정보비즈니스	지리정보공학과	경영학과	지리정보비즈니스공학사
행정지리정보	지리정보공학과	행정학과	행정지리정보공학사
위치기반IT	지리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위치기반IT공학사
물류공간정보	지리정보공학과	아태물류학부	물류공간정보공학사
해양지리정보공학	지리정보공학과	해양과학과	해양지리정보공학사
표현예술학	체육교육과	예술체육학부	표현예술학사
해양플랜트특성화	조선해양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과	해양플랜트공학사

* 폐지 연계전공명(폐지 학기) : 국제통상전문가과정(2000/1), 메카트로닉스(2004/1), 아동과학지도(2007/1), 아동체육지도(2007/1)

[별표 2-3]

복합전공 수여학위 종별

관 련 전 공	전 공 명	학 위 명
전자공학, 전기공학	전 자 전 기 공 학	공 학 사
경영학, 경제학	재 정 학	재 정 학 사
법학, 행정학	유 통 경 영	경 영 학 사
경영학, 국제통상학, 의류학	국 제 의 류 경 영	국제의류경영학사
물리학, 통계학, 컴퓨터정보공학, 경영학, 경제학	복잡계전산물리학	복잡계전산물리학사
식품영양학, 소비자아동학	아동식품영양학	아동식품영양학사
경제학, 통계학, 수학교육, 글로벌금융학	증권계량분석학	증권계량분석학사

[별표 2-4]

공학인증프로그램 전공별 수여학위 종별

대학	학과	프로그램 전공	학위명
공과 대학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전문	공학사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 전문	공학사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 전문	공학사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 전문	공학사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전문	공학사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전문	공학사
	고분자공학과	고분자공학 전문	공학사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유기응용재료공학 전문	공학사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전문	공학사
	사회인프라공학과	사회인프라공학 전문	공학사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전문	공학사
	지리정보공학과	지리정보공학 전문	공학사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전문	공학사
IT 공과 대학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전문	공학사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전문	공학사
	컴퓨터정보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 전문	공학사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전문	공학사

[별표 3]

제 호

증 서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였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

제1전공 : ○○○○○학 전공 (○○학사)

제2전공 : ○○○○○학 전공 (○○학사)

년 월 일

인 하 대 학 교 총 장 ○ ○ ○

학위번호 : 인하대 2000(학) 00000

[별표 4]

제 호

증 서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8조의5 규정에 의거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였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

제1전공 : ○○○○○학 전공 (○○학사)

년 월 일

인 하 대 학 교 총 장 ○ ○ ○

학위번호 : 인하대 학점 2000(학) 00000

학칙시행세칙

제정 : 1977. 2. 15.

개정 : 2013. 6. 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인하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학년한

제2조 (재학년한 경과자 조치) <삭 제>

제3장 입 학

제3조 (입학의 정의) 입학이라 함은 본 대학교 각 대학에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하는 것을 모두 일컫는다.

제4조 (재입학 자격) <삭 제>

제5조 (입학생의 선발) 입학생의 선발에 관해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사항외의 선발 기준과 전형방법 및 절차는 모집시 정하여 시행전에 공고한다.

제6조 (입학허가 특별조치) 정원의 입학자의 입학허가 전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4장 등 록

제7조 (등록의 시기) ① 재학생 및 복학생은 매학기 지정한 기간내에 해당 학기분 수업료를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삭제>

③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매학기 지정한 기간내에 해당학기 수업료 외에 신입생 입학금에 해당하는 재입학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8조 (등록과 출석) 매학기마다 정한 기일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출석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9조 (부분수강등록·비수강등록·인턴학기등록) ① 정규등록 4차 학기이상 등록한 자 또는 휴학기간 만료전 학기를 앞당겨 조기복학한 자가 일부 과목을 부분수강 하

고자 할 때에는 소정 등록기간 내에 신청학점에 소속 학부(과) 또는 전공의 당해 학기 수업료의 18분의 1의 해당액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본 시행세칙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한 직전학기 수료자와 유급 등의 사유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에게 비수강등록을 허용한다.

④ 비수강 등록할 학생은 수업료의 18분의1에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인턴학기에 등록할 학생은 수업료의 6분의 1의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3>

⑥ 부분수강등록·비수강등록·인턴학기등록은 졸업요건인 학칙 제26조(등록)의 정 규등록 8학기(단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10학기, 의예과 4학기, 의학과 8학기)에 포함 하지 않는다.<개정 2013. 1. 3, 2013. 6. 4>

제9조의 1 (분할등록) ① 경제적사정 등으로 전액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 수업료를 분할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분할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한 기간에 분할납부신청서를 사무처 재무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전과허가자 및 수업연한 초과자는 분할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분할등록을 승인 받은 학생은 지정한 기간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수업료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46조에 따라 미등록 제적처리한다.

④ 1차 이상 분할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수업료 반환은 학칙시행세칙 제38조(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처리)에 의하여 반환하며, 자원퇴학하는 경우 수업료 반환은 수업료및입학금반환내규에 의한다.

제10조 (징계자의 등록 및 성적처리) ① 학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학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정학기간이 30일이상일 경우 강제휴학 조치한다.

③ 시험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근신 : 부정행위를 한 교과목은 'F' 처리

2. 유기정학 15일이상 30일미만 : 시험 부정행위 이후부터 징계기간에 포함되며 이 기간중 실시되는 교과목은 'F' 처리

3. 유기정학 30일이상 및 무기정학 : 당해학기 모든 과목은 'F' 처리

제5장 교과과정과 학점

제11조 (교과목의 구분) 본 대학교 각 대학의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제12조 (복수·연계·복합·부전공의 이수) 학칙 제32조 내지 제32조의1에 의한 복수·연계·복합·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교직과정의 설치) ① 대학교 편제중 사범대학 외의 각 대학에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에 규정된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직과정의 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과과정은 각 학부(과)에서 정한 안을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② 교무처장은 담당학부(과)를 지정할 수 없는 교양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거나 개설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인턴십)교과목은 각 단과대학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설하거나,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④ 교과과정 편성 및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교과목과 학점) <삭 제>

제16조 (강의시간표의 편성) <삭 제>

제17조 (교과구분별 졸업학점) ①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대학 및 학부교양필수 학점 및 [표1] 에서 정한 최소전공 이수학점과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2011. 12. 20, 2012. 6. 22>

②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이 제1전공만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 및 학부교양필수 학점 및 [표1] 에서 정한 단일전공 이수학점과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2013. 1. 3, 2013. 6. 4>

③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이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복합전공 등 다중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 및 학부교양필수 학점을 이수하고 [표1] 에서 정한 다중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2013. 6. 4>

④ 1999학년도 이전 신입생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로 개정전 또는 각 단과대학에서 정한 교과구분별 기준학점을 적용한다.

⑤ 3항을 이수 중에 있는 학생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 입학연도별 [표1] 에서 정한 단일전공 이수학점과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5>

⑥ 부전공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전공 또는 교직과정 이수학점과 교과목구분별 기준학점을 전부 이수해야 한다.

제6장 수강신청

제18조 (수강신청) 본 대학교 재학생은 따로 정하는 수강신청규정에 의하여 이수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수강신청지도) 전담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은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7장 시험과 성적

제20조 (시험의 종류) 시험은 정기시험 · 임시시험 · 특별시험 및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제21조 (정기시험) 정기시험은 학기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임시시험) 임시시험은 소속대학장 또는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특별학점) <삭제 2013. 6. 4>

제24조 (추가시험) 추가시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성적 평가 기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기준의 $\pm 10\%$ 범위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A. 20% • B. 30% • C. 30% • D, F 20%

② 수강인원 20명 이하인 과목과 실험 · 실습과목은 평가등급 인원 비율의 $\pm 15\%$ 범위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제26조 (평점평균의 산출)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frac{(\text{각과목별학점수} \times \text{각과목별성적평점})\text{의합계}}{\text{수강신청학점}}$$

제8장 이수의 인정

제27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중의 일반휴학생과 수업일수 4분의 3선 전의 입대휴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수업일수 4분의 3선이상을 출석한 학생이 군입대할 경우에 성적평가는 중간고사 성적 등으로 평가한다.

제28조 (재입학자의 이수 인정) 재입학 학생이 체적당하거나 자퇴하기 이전에 취득학점에 대해서는 재사정하여 인정학점을 정한다.

제29조 (편입학자의 이수 인정) ①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학년 2학기 수료자 : 32학점 이내

2. 2학년 2학기 수료자 : 65학점 이내

② 학사편입생의 전적대학 이수학점은 65학점 범위에서 인정한다.

③ 지정된 선수과목은 졸업시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방법 및 수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성적 불량 학생 지도) 성적이 불량한 학생은 특별지도를 한다.

제31조 (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0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학기 등록 전에 학사경고하고 보증인에게 통보한다.

② 등록후 지정된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사경고 한다.

③ 학사경고자는 다음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반드시 전담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을 3학점 이내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학기우등생) 한 학기 이수학점이 16학점(다만, 4학년은 12학점)이상이고 F학점 없이 평점평균이 4.00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는 우등생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9장 학과배치

제33조 (전공배정) 2개이상의 전공이 개설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① 전공배정의 기준인원은 각 단과대학에서 정하여 사전 공고한다.

② 전공별 배정 기준인원의 110% 내지 140%의 범위 내에서 2학년 진급시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15, 2013. 6. 4>

③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모집단위별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3조의2 (소속변경) ① 재적중 또는 재입학 시 학부(과), 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부(과), 전공에 따라 학생소속을 변경한다.

② 학부(과)가 통합 또는 분리되었을 경우는 전공배정 사항에 따라 재적생의 학부(과)를 변경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도 졸업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부(과)명 및 전공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부(과), 전공이 폐지되는 경우 해당 재적생에 대한 소속변경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1. 12. 20>

제10장 졸 업

제34조 (졸업요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칙 제9조와 본 세칙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
2.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
3. 별도로 정한 졸업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

제34조의2 (졸업보류자의 학적처리) ① 학칙 제9조와 본 세칙 제17조에서 정한 요건

을 갖춘자 중 학칙시행세칙 제34조 제2호 내지 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의 학적은 수료로 처리한다.

② 전항의 수료자는 인턴학기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 시 이를 졸업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

③ 인턴학기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 3>

④ 수료자가 미비되었던 졸업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졸업예정일자 1개월 전까지 소속학부(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할 경우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일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35조 (교사자격) 본 대학교 각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전공과목의 2급 정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 사범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외의 각 대학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

제11장 휴학과 복학

제36조 (휴학) ① 휴학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의 일반휴학과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영하는 학생의 입대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서만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휴학중 입영 자는 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대휴학기간 만료 후 계속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일반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신입생의 경우 입대, 4주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무를 위하여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동반 체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후 첫째학기에는 휴학을 불허한다.

제37조 (휴학절차) ① 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대휴학원 (소정양식)
2. 입영명령서 사본 (원본지참)

② 귀향, 재검 등으로 입대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주일 내에 소속대학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입대 이외의 사유로 휴학하고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학원서 (소정양식)
2. 사유서 1통 (질병일 때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기타는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

제38조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처리) ①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휴학한 일반휴학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해 주되,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에 휴학한 일반휴학자의 해당학기 등록금은 반환·대체 하지 않는다.

②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군에 입대한 입대휴학자의 등록금은 제대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③ 분할등록한 학생 중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휴학한 일반휴학자와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휴학한 군입대 휴학자의 분납등록금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반환한다.

④ 제 1항 내지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로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기 학기로 대체한다.<신설 2010. 6. 15>

1. 해외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2. 복학학기에 부분(학점)등록을 희망할 경우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제39조 (휴학기간 중 복학) 등록기간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 (복학) <삭제>

제41조 (제대복학) ① 군 제대자로서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대일 이후 첫번째 학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하나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초본 1통
2.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원본지참)
3. 부대장 복학 추천서 (휴가기간이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부터 전역일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함)

② 제대한 학생은 입대휴학기간이 만료된 첫번째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때는 제적된다.

제42조 (제적)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제46조 해당자는 제적하고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제43조 (자원퇴학) <삭제>

제12장 상 별

제44조 (포상) 학칙 제49조 규정 해당학생은 본 대학교 상벌규정에 따라 표창한다.

제45조 (징계) 학칙 제50조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13장 제증명서 발급

제46조 (학적부의 기록 보관)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적, 성적, 및 특기사항

을 학적부에 기록·보관한다.

② 시행세칙 17조 2항의 전공기준학점이상을 이수한 경우 학적부에 “전공심화과정” 이수라고 표기한다.

③ 학생의 학적 및 신분상의 제증명은 학적부의 등재사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47조 (학적관계 증명서) 본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적관계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증명서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
2. 재적증명서
3. 수료예정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졸업증명서
7. 학업성적증명서
8. 기타 학적에 관한 제증명서

제48조 (신상관계 증명서) 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신상관계 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다음과 같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추천서
2. 사실증명서
3. 기타 신상관계 확인증명서

제49조 (발급 수수료) 위 제47조와 제48조의 제증명 발급에는 따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장 학생활동

제50조 (학생자치기구의 조직) 본 대학교 학생자치기구는 총학생회·총대의원회·각 단과대학 학생회·각 학부(과)학생회·동아리연합회 및 졸업학생준비회로 구성된다.

제51조 (학생자치기구의 운영) 본 대학교 학생자치기구는 학칙과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52조 (학생회 간부의 자격) 학생회간부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학기이상 8학기이하의 등록을 마친 재학생
2. 전체 평점평균 2.00이상인 학생
3.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부 칙

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7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의 해당 규정은 이 세칙 발효와 동시에 폐지한다.
2. 이 개정세칙은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은 198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세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1조제2호의 수강신청학점 제한은 1992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다.
11. 이 개정세칙은 1993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세칙은 1994년 1월14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① 이 개정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7조 졸업에 요하는 교과별 학점은,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 1997학년도 제2학년부터 적용한다.
15.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세칙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1학년 복학생 포함)은 교과과정 변경 또한 재수강으로 인하여 교양 또는 기초 전공학점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전공학점을 이수하고 전체 졸업하는데 필요로 하는 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2. 1997학년도 제2학년의 경우 본 세칙 제17조 교과구분별 기준학점을 적용한다.
 3. 개정된 본 세칙 제31조(학사경고)에의 사항은 199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7.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1998학년도 후기 졸업생의 졸업학점에 관한 사항은 구 시행세칙 제17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18.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제26조(평점평균의 산출)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1학년도 신입생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제17조(교과구분별 졸업학점) 제1항의 전공심화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제33조(전공배정)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1. 이 개정세칙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2.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제9조(부분수강과 등록)에 대하여는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7호 학교수업료및입학금규칙 개정일자에 따라 2004년 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23.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3조의2는 재적생에 대하여 일괄 적용한다.
25.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제9조를 적용한다.
26.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2008학년도 제2학기 수업료 납부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1. 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9조 및 제32조는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5>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0>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9>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세칙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개정세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모집단위 개편 및 이에 관련하여 개정된 세칙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 23조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폐지 전 규정에 따라 2013년도에 한하여 특별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표1]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 학점

대학(학부)		가		나			다		
		2000학년도 ~ 2003학년도 신입생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			2009학년도 이후 신입생		
		최소전공 이수학점	2010년 2월이후 졸업 이수학점	단일전공 이수학점	다중전공 이수학점	2010년 2월이후 졸업 이수학점	단일전공 이수학점	다중전공 이수학점	졸업 이수학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사회인프라공학과, 융합기술경영학부를 제외한 전 체 학과	42	130	54	42	130	60	42	130
	신소재공학과	42	130	54	42	130	67	42	130
	사회인프라공학과	42	130	54	42	130	69	42	130
	건축공학과	42	130	54	42	130	60	42	130
	건축학과	98	165	98	-	165	116	-	165
	융합기술경영학부	-	-	-	-	-	62	-	130
IT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42	130	54	42	130	60	42	130
	정보통신공학과	42	130	54	54	130	67	45	130
자연과학대학	전 학 과	39	130	54	42	130	60	42	130
경상대학	경 제 학 과	39	140	54	42	140	66	54	135
	국제통상학과	79	130	74 ¹⁾	- ¹⁾	130	60	42	130
경영대학	경 영 학 과	39	135	54	42	135	60	45	135
	글로벌금융학과	-	-	-	-	-	60	45	135
	아태물류학부	-	-	54	42	135	60	42	135
사범대학	전 학 과	42	130	54	42	130	60	50	130
법과대학	법 학 부	39	135 ²⁾	54	42	135 ²⁾	-	-	-
사회과학대 학	전 학 과	39	130	54	42	130	60	42	130
문과대학	전 학 과 ³⁾	39	135	54	42	135	60	42	135
생활과학대 학	전 학 과	39	132	54	42	132	60	42	132
의과대학	간 호 학 과	80	135	80	-	135	80	-	135
	의 학 과	-	-	150	-	150	-	-	-
예술체육학 부	스포츠과학, 미술, 연극영화 전공	-	-	54	42	135	60	42	135
	시각정보디자인 전공	-	-	54	42	135	60	43	135

* 다중전공 학점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복합전공 이수자가 제1전공에서 취득할 학점임

* 2002학년도~2005학년도 3학년 편입생은 위 표 “가”를 적용, 2005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2006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은 위 표 “나”를 적용,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은 위 표 “다”를 적용함

1) 국제통상학과 : 2007학년도~2008학년도 신입생은 단일전공 66학점, 다중전공 56학점임

2) 법학부 : 2013년 이후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임

3) 문과대학 : 2012학년도~2013학년도 국제언어문화학부 신입생의 2개 외국어 이수를 위한 졸업요건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함